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근로시간 단축 사항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11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근로시간 단축 사항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안 제10조제2항 제9호 신설)	3

I. 제안경위

2024년 8월 13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노동시간(1,874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과로사, 건강권 침해, 노동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내수 경제 침체와 저출생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됨.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야 함.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이루

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10조제2항제9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근로시간 단축 사항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안 제10조제2항제9호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고용정책심의회로 하여금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생략)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
1. ~ 8의2. (생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9.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u>
<u>9. · 10.</u> (생략)	<u>10. · 11.</u>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근로자 1인당 연간근로 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국가 34개국¹⁾ 중 6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긴 것으로 나타남.

< OECD 주요국의 근로자 1인당 연간근로시간 >

(단위: 시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멕시코(1위)	2,228	2,207	2,216	2,226	2,207
한국(6위)	1,967	1,908	1,910	1,901	1,872
캐나다(7위)	1,691	1,653	1,685	1,686	1,865
미국(9위)	1,817	1,789	1,813	1,804	1,799
이탈리아(13위)	1,710	1,543	1,686	1,726	1,734
스페인(18위)	1,678	1,558	1,633	1,652	1,632
일본(22위)	1,644	1,597	1,607	1,607	1,611
영국(24위)	1,537	1,364	1,498	1,531	1,524
프랑스(25위)	1,518	1,400	1,475	1,501	1,500
스웨덴(29위)	1,453	1,426	1,447	1,440	1,437
독일(34위)	1,373	1,316	1,348	1,347	1,343
OECD 평균	1,764	1,683	1,739	1,746	1,742

* 괄호 안은 2023년 기준 순위임.

자료 : OECD Stat(검색일 : 2024.8.9.).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 및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 및 이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1) OECD 가입국 38개국 중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4개국 제외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가의 시책 마련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현행법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회의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됨.²⁾

개정안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률로, 제1조 목적조항은 고용정책에 관하여 직업능력 개발,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³⁾

그러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정책을 고용정책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용에 관한

2) 자세한 내용은 【참고】 고용정책심의회 관련 근거 법령 참조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을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논의 중인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회별 현황 >

구분	특별위원회	의제별위원회	
명칭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
의제	① 산업전환 ② 불공정 격차 해소 ③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④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①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② 건강권 보호 ③ 일하는 방식 개선 ④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협력방안 포함)	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②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③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④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기간	6개월	1년	1년
구성	16명 (위원장 1, 노동계 3, 경영계 3, 정부 3, 공익 6)	13명 (위원장 1, 노동계 2, 경영계 2, 정부 3, 공익 5)	12명 (위원장 1, 노동계 2, 경영계 2, 정부 2, 공익 5)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①고용정책심의회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근로시간 등 사인 간 계약·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②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

해서는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조(고용정책심의회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4조(임기)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심의회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정책심의회 위원장은 정책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역고용전문위원회
2.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3.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4.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5.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6.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7.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8.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9.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 지역고용전문위원회
2. 법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관한 사항: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3.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사항: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4. 법 제10조제2항제6호의 사항: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5. 법 제10조제2항제7호의 사항: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6. 법 제10조제2항제8호의2의 사항: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5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효율화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